

의안 번호	2137	【울산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: 2023. 8. 25.(금)
- 제출자: 문기호 의원 외 9명
- 위원회 회부일자: 2023. 8. 25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: 2023. 9. 8.(금)

2. 제안설명 요지(문기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과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이 지정한 훈련장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
- 「예비군법 시행령」 제32조
- 「예비군 육성·지원에 관한 규칙」 제4조, 제5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홍정식)

-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원거리 교통이용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
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「예비군법」

- 제14조의3(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)**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·지원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군의 육성·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고,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「예비군법」 시행령

- 제32조(예비군의 육성·지원)**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·운영 및 유지
 2.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
 3.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
 4.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·수송·통신·의료·장비·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
 5.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,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,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,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.

「예비군 육성·지원에 관한 규칙」

- 제4조(예비군 육성·지원의 책임)** 「예비군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 국방부장관: 예비군 육성·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
 2. 각급 국가기관의 장: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·지원과 산하의 기관·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·지원

3. 지방자치단체의 장: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·지원

4.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[「예비군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 제6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·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직장 예비군부대 안의 모든 직장의 장]: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·지원

제5조(예비군 육성·지원사항의 범위)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.

■ 예비군 육성·지원에 관한 규칙 [별표] <개정 2016. 11. 30.>

예비군 육성·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(제5조 관련)

1.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·운영 및 유지
 - 가.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·유지의 지원
 - 나. 사무실 신·개축 및 보수의 지원
2.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
 - 가. 사무·통신장비 확보 및 운영의 지원
 - 나. 사무실 집기·비품의 지원
 - 다. 상황실 상황판 제작의 지원
3.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의 지원
 - 가. 훈련장 진입로의 부지 확보 및 포장과 안내판 설치의 지원
 - 나. 훈련장 안의 예비군 후생·복지시설 설치의 지원
 - 다. 예비군훈련 보조시설 설치·유지의 지원
4.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·수송·통신·의료·장비·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원
 - 가. 급식·수송·통신·의료·장비·물자의 지원
 - 1) 관할구역 안에서 작전 중인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의 지원
 - 2) 차량·선박의 확보와 인원·물자 수송의 지원
 - 3) 지역방위작전용 간이 통신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원
 - 4) 구급약품 확보의 지원
 - 5) 개인 장구류 등 장비·물자 확보 및 유지
 - 나. 전투시설의 지원
 - 1) 진지구축 자재·도구의 확보 및 유지의 지원
 - 2) 무기고·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창고 설치 및 유지
 - 3) 관측소 및 검문소용 시설 지원
5.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, 민·관·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
 - 가. 예비군 후생·복지장구 확보의 지원
 - 나.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·격려
 - 다.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
 - 라.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
 - 마.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
 - 바.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